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업자의 범위 확대 등〉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89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공급업자의 범위 확대	4
2. 서면계약서 작성의무 강화	8
3.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등	14
4. 계약 해지시 통지의무 부과	20
5.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23
6.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	29
7.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34
8. 부당한 광고·관측행사 강요 금지	39
9.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의 폐지	43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4. 7. 10.
-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공급업자(본사)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은 가맹사업 정도의 본사 종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본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 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하지만 현행법은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에 관한 권한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아, 단체결성을 통한 대항력이 부재하다 보니 본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단체를 결성하고,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거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2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로 축소함. 다만,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다.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안 제5조의3 신설).

라.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의4 신설).

마.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바. 공급업자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사.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게 광고·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급업자의 범위 확대

□ 개정안은 ① 현행법 적용 제외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축소하되,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제외대상으로 유지하고,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 우월한 지위 보유 판단 고려요소 중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u>경우</u> <단서 신설>	제3조(적용제외) ① ----- ----- -----. 1. ----- ----- ----- ----- ----- ----- <u>경우로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u>

2. (생략) 3.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나. (생략) <u>다.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u> 라. (생략) ② (생략)	<u>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u>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u><삭제></u>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중견기업 이상에 해당하고, ② 대리점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③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¹⁾.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이 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경우(연간매출액 2억원 이내 일정 규모 미만)로 축소하되,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 수가 일정 수(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공급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 다만, 공급업자가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형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 목적 달성을 위한 매출액 규모의 적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 우월한 지위 보유 판단 고려 요소 중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삭제하고 있음.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의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400억원 이하 ~ 1,500억원 이하인 경우임.

2.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 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 다.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 다만,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음²⁾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분쟁은 주로 사업 규모 격차가 큰 중견기업 이상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거래의존도는 거래상지위 판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이므로 거래의존도 요건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3) 거래상 지위 여부

(나)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

서는 또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①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2. 서면계약서 작성의무 강화

- 개정안은 대리점계약의 신중한 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 대리점 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계약서에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에 관한 사항 등 영업에 관한 필수기재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 ① ----- -----체결하기로 한 날부터 7일 이전에----- ----- ----- ----- ----- ----- -----.
<신설>	9.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에 관한 사항
<신설>	10. 영업지역 및 주변상권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11. 공급업자 또는 공급업자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또는 용역의 명성이나 신

	<u>용을 훼손하여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무에 관한 사항</u>
8. (생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부터 7일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5조에서 대리점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자의 보다 신중한 계약 체결을 담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5조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서 서명 전의 계약서(안)을 의미하므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리점거래 계약서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됨에 따라³⁾ 용어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불측의 피해, 불편을 야기할 우려⁴⁾가 있고, 타법 사례, 교부절차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현행법은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등을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⁵⁾.

4) 대리점이 새로운 공급업자에 대해 긴급하게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전교부로 인해 공급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계약서 기재 내용과 유사하게⁶⁾ 계약서에 예상 매출액 및 순이익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 및 주변상권 분석에 관한 사항, 공급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 또는 용역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리점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게 하여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임.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위탁판매 거래의 경우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만,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는⁷⁾ 반면, 대리점은 영업방식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고 판매가격 역시 공급업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리점의 일정한 매출액 규모나 영업지역을 산정·분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거래상 주요 특징 비교 >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요건	①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영업방식 준수, ③ 관리감독(통제·지원·교육), ④ 가맹금 납부	별도의 요건 없음
판매구조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공급(소매)	대리점이 소비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공급(도소매)
전속성 (종속성)	전속거래 (종속성 강함)	비전속거래 존재 (종속성 약함)
영업방식 등 통제	본부가 품질기준, 영업방식, 인테리어 등 통제	영업방식 등 통제 거의 없음
판매가격	가맹본부의 판매가격 통제	공급업자의 판매가격 통제 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법 위반
영업지역	영업지역 보장	원칙적으로 영업지역 설정 불가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비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이외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임.

3.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등

- 개정안은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절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조의3(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등)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거래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대리점이 대리점거래계약상의 상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u> <u>2. 다른 대리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대리점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u>

	<u>3. 대리점거래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대리점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u> <u>가. 대리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u> <u>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통방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u> <u>다. 그 밖에 대리점이 대리점거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대리점거래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대리점거래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u> <u>③ 공급업자가 제1항에 따른</u>
--	---

	<u>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리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u>④ 공급업자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점거래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리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대리점거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대리점거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점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급업자나 대리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 ----- -----

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5조,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	---

□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⁸⁾이 존재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리점의 지속적인 영업권 보장으로 대리점사업자의 안정적 거래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점계약의 갱신주기가 1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⁹⁾, 대리점 응답자 중 64.9%가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투자한 창업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약기간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 초기 창업비용 회수를 위한 일정 계약기간 보장 필요성 >

(초기 창업비용 투자 대리점, 단위: %)

업종	(표본수)	필요	불필요
식음료	(3,083)	68.5	31.5
가구	(353)	74.2	25.8
도서출판	(266)	73.3	26.7
계약	(2,520)	62.6	37.4
의류	(676)	82.1	17.9
통신	(1,340)	70.2	29.8
기계	(707)	67.9	32.1
사료	(342)	54.1	45.9
생활용품	(442)	64.9	35.1
주류	(1,076)	38.5	61.5
페인트	(748)	46.9	53.1
화장품	(503)	76.1	23.9
자동차판매	(459)	94.1	5.9
자동차부품	(1,194)	67.8	32.2
보일러	(170)	79.4	20.6
가전	(940)	66.2	33.8
석유유통	(1,162)	49.4	50.6
의료기기	(1,332)	68.9	31.1
비료	(157)	68.2	31.8
총합	(17,470)	64.9	35.1

※ 자료: 2023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 다만, 일정 계약기간의 보장은 초기 창업비용의 투자 비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이한 업종에 일률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대리점계약의 평균 유지기간은 10년 이상이 39.6%로 가장 높고, 5~10년 미만이 25.4%로 두 번째로 높았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경우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지 않아 계약갱신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업종별로 거래내용, 매몰비용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계약 해지시 통지의무 부과

- 개정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대리점에
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
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를 무효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조의4(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u>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u>제5조부터 제12조까지</u> 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 ----- ----- -제5조,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제30조(벌칙) ① ----- ----- ----- -----.
1. ~ 5. (생략)	1.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하게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자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계약해지 절차의 강화로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보임.

참고로,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¹⁰⁾이 존재하고 있음.

10) 다만, 유예기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개정안은 3개월 이상, 가맹사업법은 2개월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

- 다만, 개정안은 계약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의 위반만으로 형벌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¹⁾.

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11) 참고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약해지 절차 위반 그 자체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음.

5.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 개정안은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고,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규정하며,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5(대리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대리점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대리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단체는 그 공급업자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대리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다수의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

	<u>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대리점단체는 대리점거래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u>
제18조(협회의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u>제5조부터 제12조까지</u> 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18조(협회의의 조정사항) ----- ----- ----- <u>-제5조,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u> ----- ---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제23조(시정조치) -----

는 <u>제6조부터 제12조까지</u>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6조부터 제12조까지</u>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u>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u>----- ----- ----- ----- ----- 제25조(과징금) ① ----- ----<u>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에는 대리점사업자단체 설립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대리점들의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개정안은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제 공을 금지하도록 하며, 대리점사업자단체가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그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개별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와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하여 일방적인 거래조건의 변경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실효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거래상 지위 격차와 관련하여 ① 단체구성권이 인정 되는 국내 사례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등이 있고, ②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 단체 관련 주요 법률 현황 >

소관부처	법적 근거	내 용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¹²⁾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 위 향상 도모를 위한 단체
금융 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 ¹³⁾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계약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 다만, 개정안은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모두 명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거래상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를 동일하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거래상 주요 특징 비교 >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요건	① 영업표지 사용, ② 일정한 품질기준·영업방식 준수, ③ 관리감독(통제·지원·교육), ④ 가맹금 납부	별도의 요건 없음
판매구조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공급(소매)	대리점이 소비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공급(도소매)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 매출규모 조사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전속성 (종속성)	전속거래 (종속성 강화)	비전속거래 존재 (종속성 약함)
영업방식 등 통제	본부가 품질기준, 영업방식, 인테리어 등 통제	영업방식 등 통제 거의 없음
판매가격	가맹본부의 판매가격 통제	공급업자의 판매가격 통제 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법 위반
영업지역	영업지역 보장	원칙적으로 영업지역 설정 불가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구성권의 경우에는 대리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명문화 및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등은 수용 가능하나, 가맹거래 등과 달리 영업방식 및 거래형태 등이 다양하고, 비전속적 거래가 존재하는 대리점거래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공급업자-대리점 간 거래조건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

□ 개정안은 ①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 발생으로 기존 영업지역 변경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의하도록 하며, ③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대리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직영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영업지역”이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 ① ----- -----체결하기로 한 날부터 <u>7일 이전에</u> ----- ----- ----- -----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③ (생략)

<신설>

-.

1. ~ 7. (현행과 같음)

8.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12.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① 공급업자는 계약 체결 시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대리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대리점과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

	<u>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8조(협회의 조정사항)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u>제5조부터 제12조까지</u> 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18조(협회의 조정사항) ----- ----- ----- -제5조,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 ---.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6조부터 제12조까지</u> 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시정조치) ----- ---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 ----- ----- -----.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6조부터 제12조까지</u> 를	제25조(과징금) ① ----- ----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u>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 ----- ----- ----- -----. <u>6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대리점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대리점 설치 행위를 한 자</u>
---	---

- ☐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② 기존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및 영업지역 안에서 직영점·가맹점 설치 행위 금지¹⁴⁾, 이를 위반하는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 격차를 고려하면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도 가맹사업거래에 준하는 영업지역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대리점거래는 영업방식이나 거래형태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적용 대상을 특정 공급업자와 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전속 대리점이 많은 대리점거래 특성 상 합리적인 영업지역 설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전에 대리점별 영업지역을 설정 시 대리점 간 경쟁이 제한되어 가격상승 등 소비자후생의 저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 개정안은 ①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이를 대리점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를 부과하며, ② 공급업자가 점포환경개선 관련 공사 등을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 그 시공사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10조의3신설, 안 제23조, 안 제25조제1항 및 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설></u>	제2조(정의) ----- -----.
<u><신설></u>	7. “점포환경개선”이란 대리점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u><신설></u>	제10조의3(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u>사유 없이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대리점이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공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5조의5에 따른 대리점단체와 시공자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u>제5조부터 제12조까지</u> 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 ----- ----- -제5조,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6조부터 제12조까지</u> 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	제23조(시정조치) ----- ---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

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6조부터 제12조까지</u>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범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u> ----- ----- ----- -. 제25조(과징금) ① ----- ----<u>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u>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 ----- ----- ----- ----- <u>6의3.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를 한 자</u>
--	--

□ 개정안은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설비설치 또는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이를 대리점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점포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 다만, 현행법령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¹⁵⁾하여 대리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¹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3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주의 자발적인 리뉴얼 결정 비율이 66.2%로 나타난 바 있음.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7호)

제6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

< 리뉴얼 결정방식 >

(점포 리뉴얼 경험 대리점, 단위: %)

업종	(표본수)	본사의 요청	대리점주의 자발적 결정
식음료	(254)	13.8	86.2
가구	(86)	30.2	69.8
도서출판	(22)	0.0	100.0
제약	(100)	0.0	100.0
의류	(275)	68.7	31.3
통신	(223)	21.5	78.5
기계	(68)	20.6	79.4
사료	(14)	14.3	85.7
생활용품	(34)	17.6	82.4
주류	(25)	0.0	100.0
페인트	(37)	10.8	89.2
화장품	(124)	37.9	62.1
자동차판매	(314)	69.4	30.6
자동차부품	(234)	33.3	66.7
보일러	(24)	16.7	83.3
가전	(111)	28.8	71.2
석유유통	(130)	18.5	81.5
의료기기	(74)	1.4	98.6
비료	(9)	22.2	77.8
총합	(2,158)	33.8	66.2

※ 자료: 2023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규정(경영간섭 금지)으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하므로 실익이 미미하고, 정부가 시공사 선정방식까지 관여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8. 부당한 광고·판촉행사 강요 금지

- 개정안은 ①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게 광고·판촉 행사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제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 대리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시정 조치, 과징금 및 벌칙)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안 제23조, 안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4(부당한 광고·판촉행사 등의 강요 금지) ①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게 광고·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업자는 광고·판촉행사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함에 있어 대리점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행위의 유형·기준

제18조(협회의 조정사항)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u>제5조부터 제12조까지</u>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6조부터 제12조까지</u>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6조부터 제12조까지</u>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u>및 제2항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8조(협회의 조정사항) ----- ----- ----- -제5조,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제23조(시정조치) ----- ---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 ----- ----- -. 제25조(과징금) ① ----- ----제5조의5제5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 ----- ----- ----- ----- -----.
---	--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 ----- ----- -----. <u>6의4.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u> <u>을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u> <u>판촉행사 또는 다른 사업자</u> <u>와의 제휴에 대한 강요 행위</u> <u>를 한 자</u>
---	---

□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 강요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비용 부담비율에 대한 대리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또한,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시 대리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공정위·법원의 광고·판촉행사의 위법성 혹은 부당성 판단은 사후적이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현행법령에서도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고¹⁷⁾,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¹⁸⁾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규정(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으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7호)

제3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의 폐지

- 개정안은 대리점법에 규정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 없이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3조(고발) ①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삭 제>

현행	개정안
<u>요청할 수 있다.</u>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u>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u>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u>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u>	

□ ‘전속고발권’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¹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규정²⁰⁾되어 있었음.

○ 전속고발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시장경제상황의 실상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 이를 규제함이 상당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규정되어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서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0. 12. 31. 제정, 1981. 4. 1. 시행) 제60조(고발) 제55조 및 제56조의 죄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음²¹⁾,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고발권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²²⁾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996년 법률을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무, 검찰 총장의 고발요청권, 공소제기 후 고발 취소 제한 규정이 신설하였고, 2013년에는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까지 고발요청권을 확대²³⁾하고,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음²⁴⁾.

□ 개정안에 따른 전속고발권 폐지는 찬반 각 입장의 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논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헌재 1995. 7. 21. 94헌마136(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22)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3) 대리점법의 경우에는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까지 확대되었음(고발요청 판단기준: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계에 끼친 피해규모)

24)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여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으나(2018. 8. 21.),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음.

당시 합의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전속고발권 찬반의 요지 >

유지 입장	폐지 입장
▶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및 형사 처벌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 ▶ 형사적 제재의 통제가 어려워짐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 및 기업활동 위축 우려	▶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일 경우 헌법상 보장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우려 ▶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충분한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IV」

□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사집행이 필요한 일부 중대·명백한 법 위반 행위는 현행법상 공정위의 고발의무와 검찰총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고발요청제를 통하여 형사책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공정거래 위반사건에 대한 외국의 형사집행 사례 >

- (EU 등) EU,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덴마크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형벌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영국 등)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가격담합 등 일부 중대한 범위반에 대해서만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집행 실적은 거의 없음
- (일본) 공정거래 관련법률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전속고발제 운용
- (미국) 법원을 통한 민사집행이 대부분이며 가격담합 등 일부 중범죄에 국한하여 형사집행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문 의 처

02)6788-5114